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74 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 강준현·홍성국·임호선

박영순 · 양정숙 · 황운하

김수흥 · 인재근 · 기동민

김상희 · 이학영 · 남인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,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 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제10호 중 "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"을 "지원"으로 한다.

제63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	제45조(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	②
와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	10
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	
학에 대한 <u>부지의 매입 및 시</u>	지원
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	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3조의8(연구기관, 국제기구,	제63조의8(연구기관, 국제기구,
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	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
원)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	원) ①
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	
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	
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	
기구, 종합병원 및 「국가과학	
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	
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	
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	
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	
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</u>

	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
	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
	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
	지원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